

부산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0가단3183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전민규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지영

변 론 종 결 2022. 7. 5.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41,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9973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6. 15. ‘C은 원고에게 144,635,3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C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2. 14.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8. 3. 6. 확정되었다. 나. 한편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원인은 2010. 12. 16.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수익과 관련된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3. 12. 13.경 당시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합145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C이 2015. 7. 13.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5595호로 1,000만 원을 해방공탁함으로써 위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 내려졌고, C은 같은 날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서 D로, 다시 E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20.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000만 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노240호 업무상배임 등으로 재판받을 받게 되었는데 F는 2016. 6. 7. 위 법원에 ‘C은 재판 기간을 이용하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옮기는 등 재산을 계획적으로 은닉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2016. 6. 17.경에는 C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6. 6. 7.경에 C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은 사해행위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144,635,312원, 주식회사 G에 대한 채무 109,000,000원이 있었으므로 최소 253,635,312원(144,635,312원 + 109,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약 1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C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50,000,000원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09,000,000원을 공제한 41,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한다.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2015. 7. 13.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 무자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우

【 별 지 】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경상남도 양산시 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칠곡본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

공동주택, 대피소

1층 1328.76㎡

2층 1328.76㎡

3층 1319.40㎡

4층 1319.40㎡

5층 1319.40㎡

6층 1319.40㎡

7층 1319.40㎡

8층 1319.40㎡

9층 1319.40㎡

10층 1319.40㎡

11층 1319.40㎡

12층 1319.40㎡

13층 1319.40㎡

14층 1319.40㎡

15층 1319.40㎡

지하층 1301.4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조 제10층 호 98.2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1. 경상남도 양산군 19864.6㎡

대지권의 표시 :

1. 소유권대지권 비율 19864600분의 39996

